

2024 심도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일부 개정(신 · 구대조표)

일부 개정 전	일부 개정 후 (2024.3.19.)
제8조(임원의 자격)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.	제8조(임원의 자격) 학부모회 임원은 우리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한다.